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약관

2018. 9. 1.

세종텔레콤(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인가, 효력 및 변경)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입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통하여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의 개정 시 적용기준은 개정 시점 이후부터 계약된 고객에 한하며, 개정 전 계약 고객에 소급적용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이하 "설비"라 합니다.)
 2. 단말기기: 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
 3. 서비스: 이용고객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부가기능을 이용하고, 이용고객간에 통신을 하며 타사업자의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4. 이용고객: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고객번호를 부여 받은 이용자
 5. 이용고객번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필요한 번호로서 IP번호를 지칭
 6. IP번호: 이용고객의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는 IP 단말기기수에 따라 결정되는 A Class IP번호, B Class IP번호, C Class IP번호, 단일 IP번호
 7.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8. 요금납입책임자: 이용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9. 해제: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해지: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구내선 : 고객 구내 주배선반으로부터 구내 단말기까지의 회선

제5조 (서비스영역 등)

- ① 이 서비스는 회사가 구성한 설비 및 응용기능을 서비스영역으로 합니다.
- ② 이 서비스는 회사가 구성한 설비 및 응용기능을 품질보증영역으로 합니다.

제 2 장 계약 체결

제6조 (이용계약의 종류)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속형태에 따른 구분
 - 가. 근거리통신망 이용계약 : IP번호중 B Class IP번호, C Class IP번호, 또는 다수의 단일 IP번호를 이용, 이용고객측 통신망에 다수의 IP 단말기기를 연결하여 서비스 이용
 2. 접속회선에 따른 구분
 - 가. 전용회선 이용계약 :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단말기기를 접속하여) 서비스 이용
 - 나. 구내선 이용계약 : 구내선을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
 3. 사용기간에 따른 구분
 - 가. 일반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 나. 정기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년, 2년, 3년, 5년 단위
 4.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 가. 재판매 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에 선조설비를 추가하여 이용고객 이외의 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 나. 상용 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를 이용하여 이용고객 이외의 자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설비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 다. 비 상용 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를 이용고객 내부 인터넷 이용을 위해서 서비스 이용
- ② 근거리통신망 이용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 제1항 제4호 가항에 따라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재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협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단위)

- ① 근거리통신망 이용계약 단위는 접속회선 1회선으로 합니다.

제8조 (이용계약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제9조 (이용신청)

- 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만약,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합니다.
- ②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이용청약서(또는 계약서) (소정양식)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3. 기타 요금감면,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 ③ 이용신청고객이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 책임자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신청의 승낙)

-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신청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1. 서비스개통 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동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중 체납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1.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2. 설치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에 부적합한 때
3. 설치장소가 회선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전용회선을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기가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6. 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승낙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12조 (이용고객번호 부여 및 변경 등)

① 회사는 이용계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전용회선을 이용한 이용계약의 경우는 별표 제2호(이용고객번호부여 방법)에 따라 이용고객번호를 이용고객에게 대여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이용고객번호를 확보한 근거리통신망 이용고객은 이용하고자 하는 IP번호를 회사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IP번호로는 통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단말기기 등의 설치)

① 이용고객 측의 단말기기(PC, Router, Switch, Host, Terminal 등)와 회선종단장치(MODEM, CSU, DSU등)는 이용고객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단말기기 및 회선종단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기 등이 전용회선을 통하여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해당장

비에 중단 없는 전원공급을 위하여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사용해야 하며, 낙뢰나 과전압 방지를 위하여 통신접지와 전기접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④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는 사용자측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자측 설비에 회선시험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고객의 설비가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운영점검)

회사는 제13조에 의하여 이용고객이 설치한 단말기기 등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의 개통)

- ① 회사는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서비스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 예정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합니다.
- ③ 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 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30일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개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와 전화국간의 거리, 회사를 제외한 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장비 부족 등 회사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개통이 지연될 경우, 재개통일은 개통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사실을 이용고객에게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⑦ 서비스 개통일은 이용고객이 소정양식의 개통 확인서에 서명한 시점, 이용고객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개통이 된 것을 확인한 시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시점 중에서 가장 빠른 사항을 적용합니다.

제 3 장 유지보수

제16조 (단말기기 등의 유지 및 보수)

이용고객은 이용고객 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고장신고 및 처리)

- ① 이용고객은 회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고객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 또는 지정된 유지보수업체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4 장 역무제공 및 이용

제18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제23조 및 제20조 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 된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 등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⑦ 회사는 제17조에 따라 이용고객이 신고한 고장내역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관련 내역(발생일 시, 조치내역, 서비스 재개시점을 포함합니다)을 관련 대장 또는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⑧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 15조의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제19조 (이용고객의 의무)

-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이용고객은 회사를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와 정보를 스스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회사가 설치한 설비로서 그 구내에 있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고객은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를 연결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이용고객은 설비 및 회사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임대 받은 기기를 주의를 다하여 이용하여야 하고 임대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에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⑥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 ⑦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0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21조 (IP번호 등)

- ① IP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② 이용고객에게 통보된 IP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서비스의 종류)

- ① 전용회선, 구내선 등 접속회선을 이용한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형태	접속회선	속도	비고
근거리통신망 이용	전용회선	56/64 Kbps	매초당 56/64 K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128 Kbps	매초당 128 K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256 Kbps	매초당 256 K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512 Kbps	매초당 512 K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1Mbps	매초당 1 M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1.544Mbps	매초당 1.544 M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2Mbps	매초당 2 M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2.048Mbps	매초당 2.048 M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3Mbps	매초당 3 M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4Mbps	매초당 4 M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5Mbps	매초당 5 M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10Mbps	매초당 10 M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20Mbps	매초당 20 M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30Mbps	매초당 30 M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40Mbps	매초당 40 M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45Mbps	매초당 45 M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50Mbps	매초당 50 M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155Mbps	매초당 155 M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종류 및 제23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기능을 변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요금 및 세부 내역은 회사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제23조 (서비스의 기본기능)

- ① 전용회선, 구내선등 접속회선을 이용한 서비스의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 1. 전자우편(mail): 서신을 주고받는 기능

- 2. 원거리접속(telnet): 인터넷에 접속된 다른 컴퓨터에 접속하는 기능
- 3. 화일송수신(ftp): 인터넷에 접속된 다른 컴퓨터에 접속, 화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
- ② 제1항 제1호의 전자우편에서 서신의 전달확인은 서비스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서 접속하려는 상대 컴퓨터에 자신의 이용고객번호가 있거나 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이용고객번호가 있어야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4조 (서비스의 부가기능)

전용회선, 구내선등 접속회선을 이용한 서비스의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부가기능은 기본기능을 이용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 1. 네트워크뉴스: 여러 관심분야별 주제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전자게시판의 기능으로 이용고객은 관심 있는 뉴스그룹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자료검색: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가 존재하는 개방되어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원거리접속 기능 등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 3. 자료검색도구 이용: 인터넷에서 산재한 정보를 이용고객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응용프로그램으로서 다른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4. 기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각종 응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추가서비스의 이용)

- ① 이용고객은 제22조 규정에 의한 서비스 외에 회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추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추가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요금 등의 제반사항은 회사와 별도 계약에 의합니다.

제 5 장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의 제한)

-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고객은 회사와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판대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제19조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 기기를 연결한 경우
 - 3.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나 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팸 메일 발송을 매개하는 경우
 - 4.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5.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6. 관계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이용고객번호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10.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청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12. 이용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3.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서버(Web/FTP/Mail Server 등)를 설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④ 이용고객이 범죄행위, 회사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 ① 회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6 장 계약변경 및 해제·해지

제28조 (계약사항의 변경)

- ① 이용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 변경청약서와 관련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계약종류(접속형태, 접속회선, 접속회선속도,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3.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
 4. 납입방법의 변경
 5. 감면 및 할인대상 자격의 변경
 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 (관계법령을 첨부한 서류)
 7. 국가기관의 경우 서비스 이용권의 상위 또는 하위 기관으로의 이관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관계기관에서 위법건축물로 지정한 건물인 경우
 4. 회선설치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적, 물리적으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를 강제한 것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이용고객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
 6. PC접속 이용계약자로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설비가 구성되어있지 않은 지역으로 단말기 설치장소 또는 주소가 변경될 경우
 7.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곤란한 경우
- ③ 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의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29조 (계약의 갱신)

- ① 정기이용계약 만료 시 30일전까지 새로운 이용계약의 체결이 없으면 이용고객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별도의 계약에 의해 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서비스의 일부가 폐지된 경우
 4. 관계법령, 관계정부기관 등에 의해 서비스의 일부가 금지되거나 폐지된 경우

제30조 (일시중지 및 재이용)

-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중지 하고자 할 경우는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일시중지 희망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중지기간은 최소 2월 이상이어야 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고객은 서비스 일시중지 시 월 사용료의 1/2의 해당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일시중지개시 및 제3항에 의한 서비스 재개 시에는 동 사실을 이용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31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32조 (해제, 해지)

- ①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이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③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한 이용고객이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회사

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제1호에서 정한 할인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며, 이용고객이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사항을 위반하고 7일 이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증빙서류 구비 시 이용고객에게 할인반환금을 면제합니다.
 - 1. 이용고객이 서비스제공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의 경우 단, 서비스 개시 후 6개월이내 해지 시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개통 시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2. 기타 회사가 할인반환금을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 7 장 요 금 등

제33조 (요금의 종류)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설치비: 신규설치 또는 설치 장소 변경시 납입하는 요금으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 2. 회선사용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3. 장비사용료: 회사로부터 라우터등 통신기기를 제공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임대요금
 - 4. 할인반환금: 정기 계약기간내 중도해지시 이용기간 중 추가 할인된 요금만큼 변상해야 하는 금액
- ② 제1항의 요금은 별표 제1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능의 추가등 기타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34조 (이용요금 및 계산방법)

- ① 제33조의 요금 중 장기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 설치비: 서비스의 이용승낙 또는 설치장소변경 승낙 등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하며, 별표 제1호 (서비스 요금)과 같습니다.
 - 2. 회선사용료: 별표 제1호 (서비스 요금)과 같습니다.
 - 3. 장비임대료: 별표 제1호 (서비스 요금)과 같습니다.
 - 4. 할인반환금: 별표 제1호 (서비스 요금)과 같습니다.
- ② 제37조 및 제 38조에 따라 감면 및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 및 할인된 금액을 회선 사용료 및 추가 사용료로 합니다.

제35조 (요금의 납입청구)

- ①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이용요금의 정산을 위한 회기월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납입기일은 제10조 이용신청의 승낙 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는 당월 말일로 합니다.
- ⑦ 회사는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해당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해당월의 사용요금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얻은 액을 1일의 요금으로 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개통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제36조 (요금의 납입의무 및 납입방법)

-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 된 경우 해당기간중의 요금을 면제합니다.
- ③ 요금 등의 납입의무자는 고객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신청 시 고객은 별도의 요금납입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금납입책임자와 고객은 연대하여 납부책임을 집니다.
- ④ 이용고객은 계약 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며, 회사에 서면 신청을 통해 납입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이 납입방법 변경을 신청할 경우,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 ⑥ 회사가 인정하는 요금납입 방법은 아래 각 호의 사항과 같습니다.
 - 1. 지로에 의한 방법
 - 2. 은행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 3.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 4. 선납 등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

제37조 (면탈요금의 징수)

-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의 요금을 면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이에 준용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제38조 (체납요금 등의 독촉)

- ①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고객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할 때에는 독촉장 발부 시 납입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제39조 (가산금의 부과)

- ① 이용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한 요금을 가산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요금의 납입의무자가 주한외국공관, 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

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제40조 (요금의 감면)

- ① 회사는 서비스 요금 중 기본 사용료와 추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방법은 별표 제1호와 같습니다.
- 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회사에 공문으로 신청해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감면을 적용합니다.
- ③ 요금감면대상자는 요금감면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④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을 환수합니다.

제41조 (요금의 할인)

- ① 회사는 이용계약시 서비스 요금중 추가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방법은 별표 제1호와 같습니다.
- ② 할인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할인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할인액을 환수합니다.

제42조 (요금의 반환)

-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용고객이 계속 24시간이상 통신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통신이 가능하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상당한 회선사용료를 반환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자를 반환하거나 적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제43조 (이의신청)

-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년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등

제44조 (손해배상의 범위)

-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2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45조 (손해배상의 청구)

-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 ③ 이용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체납금액을 우선 공제한 후 배상합니다.

제46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① 이용고객이 제19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7조 (면책)

-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용에 한하며, 특히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 회사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입은 이용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 ⑥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13조 제3항에서 명시한 장비 및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⑦ 전쟁, 폭동, 내란,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 천재지변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본 약관의 제반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⑧ 회사의 의무는 이용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요청 등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⑨ 회사는 필요에 의해 이용고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는 제45조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48조 (관할법원)

-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고객은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합니다.

- ②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9 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치

제49조 (개인정보의 수집)

-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항목과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고객이 기입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고객이 선택항목에 당해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50조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구)

-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방문하거나 또는 이용고객번호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51조 (동의를 철회)

-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49조 1항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52조 (불만처리)

- ①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합니다.

제53조 (분쟁조정)

- ① 회사와 이용고객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10 장 침해사고 및 SPAM 대응

제54조 (침해사고의 긴급대응)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55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Fax, SMS, pop-up 등을)을 이용합니다.
-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IP) 차단 등)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필터링 등)
- ④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 ⑤ 회사는 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 제거 및 IP 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며, 회사가 이와 관련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고객은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본 약관의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 ⑥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고객에게 관련 Agent 또는 Softwar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6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 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57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① 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

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등의 제한)

- ① 고객은 전자우편,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고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고객은 광고성 정보 전송 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 ④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⑤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고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 2.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⑥ 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59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 44조 등 약관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60조 (정보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의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공 정보 및 광고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또는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회사는 원활한 정보전송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워.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컴퓨터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전송, 스팸전송 등이 발견된 경우
 2. 해당 이용자와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민원 또는 제보가 접수된 경우
 3. 기타 회사와 체결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유동IP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역무를 제공받는 고객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홈페이지 공시, E-mail, 전화, FAX 등으로 통지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5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0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6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별표1] 서비스 이용요금

(1) 요금표

가. 회선사용료(월액, 시내구간 기준)

1. 인터넷전용선

- 기본사용료

(단위: 원/월, 부가세 별도)

속도	일반기업	게임방 / 벤처기업
56/64Kbps	780,000	312,000
128Kbps	1,020,000	408,000
256Kbps	1,360,000	544,000
512Kbps	1,840,000	736,000
1.544Mbps	3,500,000	1,400,000
2.048Mbps	4,620,000	1,848,000
45Mbps	34,530,000	-

- * 시외 구간은 서비스 거리별로 별도 산정됩니다.
- * 상기 요금표 이외의 속도별 이용요금은 별도 이용조건과 협정에 의합니다.
- * 당사와 업무제휴계약 및 기타 특별계약에 관계에 있는 경우, 제공조건과 이용요금은 별도의 협정에 의합니다.
- * 벤처기업과 인터넷 관련 교육학원, 정보통신 활성화 관련 IT사업자, CP사업자, 중소기업청 추천기업 및 정부 정책사업으로 지정(또는 선정)된 회선에는 게임방 요금을 적용 합니다.

2. 메트로이더넷

- 기본사용료

(단위: 원/월, 부가세 별도)

속도	일반기업	벤처기업	게임방
1Mbps	2,470,000	988,000	-
2Mbps	4,017,000	1,607,000	-
3Mbps	4,608,000	1,843,000	-
4Mbps	5,206,000	2,082,000	-
5Mbps	5,890,000	2,356,000	900,000
10Mbps	8,759,000	3,504,000	1,300,000
20Mbps	11,825,000	4,730,000	2,300,000
30Mbps	15,254,000	6,102,000	3,500,000
40Mbps	18,457,000	7,383,000	-
50Mbps	20,785,000	8,314,000	-
100Mbps	36,290,000	14,516,000	-

- * 상기 요금표 이외의 속도별 이용요금은 별도 이용조건과 협정에 의합니다.
- * 당사와 업무제휴계약 및 기타 특별계약에 관계에 있는 경우, 제공조건과 이용요금은 별도의 협정에 의합니다.

나. 설치비(1회)

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구분		속도	설치비
인터넷전용선		56/64kbps~2.048Mbps	100,000원
		45Mbps 이상	별도 문의
메트로 이더넷	일반기업	20M 이하	200,000원
	벤처기업	20M 이상	300,000원
	게임방	5M~30M	100,000원

라. 장비 사용료(월액)

(단위: 원/월, 부가세 별도)

제품명	월 임대료	비고
라우터(Router)	40,000	56/64Kbps~2.048Mbps
모뎀	10,000	128Kbps~2.048Mbps (56/64Kbps의 경우 무료)
스위칭	40,000	-

- ※ 상기 장비 이외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 ※ 기타 임대장비의 종류와 임대가 변경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시 합니다.
- ※ 임대장비의 계약기간내 중도해지 또는 손망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청약서에서 정한 규정 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2) 요금의 감면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감면대상	감면율
1.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2. 교육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교육기관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4. 비영리 단체 5. 신문 및 방송기관 6.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40%

※ 인터넷전용선과 메트로이더넷의 게임방, 벤처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요금의 할인

가. 장기계약 할인

- 서비스 이용고객이 장기계약을 할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할인
- 요금의 감면과 타 할인제도와 중복적용이 가능

- 인터넷전용선

구분	1년 이하 계약	1년 계약	2년 계약	5년 계약
내용	할인 없음	15%	20%	25%

- 메트로이더넷

구분	1년 이하 계약	1년 계약	2년 계약	3년 계약
내용	할인 없음	10%	15%	20%

나. 은행자동이체 할인(2013.5.1부터 폐지)

- 은행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의 경우 납기내 납부한 금액의 1%를 익월 청구할 금액에서 할인하여 청구합니다
 - 타 할인제도와 중복적용이 가능.
 - 2013.5.1. 기준 자동납부 이용자는 납부 방법을 유지하는 동안 동일한 할인혜택 적용

다. 다회선 이용고객 할인

- 동일 납입자가 다회선을 이용시 이용요금의 10% 추가 할인
- 요금의 감면과 타 할인제도와 중복적용 가능

- 인터넷전용선

구분	56Kbps~512Kbps	T1이상
내용	5회선 이상	2회선 이상

- 메트로이더넷

구분	1M~10M	20M이상
내용	5회선 이상	2회선 이상

라. 요금선납에 따른 이용고객 할인

- 서비스 이용료를 선납한 고객에게 추가 할인
- 적용대상 : 전 서비스
- 타 할인제도와 중복적용이 가능

구분	1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내용	2%	5%	10%	15%	20%

마. 예약가입 할인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개통 희망일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신청하는 고객에게 추가 할인
- 적용대상: 전 서비스
- 적용범위: 최초 1개월의 이용료의 50% 할인
- 타 할인제도와 중복적용이 가능

바. 재계약 할인 (1회에 한함)

- 서비스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 고객에게 추가 할인
- 적용대상 : 전 서비스
- 적용범위 : 서비스 계약 이용료의 5% 할인

○ 타 할인제도와 중복적용이 가능.

사. 공동 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 출시 등에 따른 할인

- ①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 출시 등이 회사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회 및 이용고객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기회 확대를 통한 정보통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 공동 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의 대상이 되는 당사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10% 한도 내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할인할 수 있습니다.
- ②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 출시 등에 따른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할인사유가 있는 경우, 규정된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용요금을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할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
 - 영업 관련 비용 절감에 따른 할인
 - 요금 청구 및 수납 관련 비용절감에 따른 할인
 - 기타 합리적인 원가 절감에 따른 할인
- ③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의 1개 상품을 해제, 해지 또는 반환, 반품하는 경우 잔여 상품은 일반요금으로 환원됩니다.
- ④ 각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이용조건 등은 대상 사업자 및 구성 상품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상품별로 지정된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합니다.

※ 타 할인제도와 중복적용이 가능

(4) 계약의 연장

- 계약만료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 자동연장 계약기간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5) 할인반환금

- 계약기간내에 이용고객이 서비스이용을 중도해지를 하거나, 이용고객이 채무불이행으로 회사가 직권해지를 할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에 할인반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할인반환금 산정규정
- 할인반환금 = (월 기본사용료 × 사용개월수) ×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 기본사용료 : 회사가 서비스별 기준요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정한 금액
 - 사용개월수 : 이용고객이 개통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사용한 개월수
 - 계약기간 할인율 : 이용고객이 사전에 계약기간을 정하고 받은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 이용고객이 해지일 까지 사용한 개월수의 할인율
(1년미만은 할인없음, 2년미만은 1년계약, 3년 미만은 2년계약을 적용함)
- 한시적인 특별행사등을 통해 이용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청약서에서 정하는 할인반환금 정산 규정을 따릅니다.

(6) 서비스 이용중지 및 직권해지

- 이용고객이 이용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로부터 1개월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고, 일시 중지된 시점부터 7일간 체납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으며, 직권해지 시점부터 1개월간 체납할 경우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중지(또는 직권해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중지(또는 직권해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중지시 서비스 이용료는 미부과하며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별표2] 이용고객번호 부여방법

1. 등급번호

- 가. A Class IP 번호 : 32bit로 이루어진 인터넷 주소영역중 24bit영역을 이용고객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것으로 최대 $2^{24}-2$ (16,777,214)개의 IP단말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나. B Class IP 번호 : 32bit로 이루어진 인터넷 주소영역중 16bit영역을 이용고객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것으로 최대 $2^{16}-2$ (65,534)개의 IP단말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다. C Class IP 번호 : 32bit로 이루어진 인터넷 주소영역중 8bit영역을 이용고객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최대 2^8-2 (254)개의 IP단말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라. 단일 IP 번호 : 32bit로 이루어진 인터넷 주소영역중 마지막 bit영역까지 정해진 것으로 1개의 IP 단말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 x^y 는 x 의 y 승

2. 이용고객번호 확보방법

- 가. 이용고객이 신규로 1개의 C Class 또는 다수의 단일 IP번호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고객은 KRNIC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용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규모에 적절하게 IP를 회사에 신청하며, 회사는 KRNIC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KRNIC에 발송하여, 이용고객의 IP 번호와 Domain Name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나. 이용고객이 추가로 C Class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1개의 C Class를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고객은 KRNIC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용고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검토후 KRNIC에 발송하여, 이용고객의 IP 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 이용고객이 신청한 IP 수요 및 이용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와 KRNIC은 실사를 거쳐 IP할당 규모를 축소하거나, 기 할당된 IP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라. 고정 IP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 또는 이용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WHOIS 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